

# 排出 賦課金 制度

鄭 國 鉉  
(環境庁 振興協力課長)

## 1. 排出賦課金制度 實施背景

앞으로 本欄을 통하여 數회에 걸쳐 排出賦課金 制度의 內容 및 同 制度에 關한 質疑回示內容等 을 解説하고자 한다.

지난해 9월 1일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실시해 오고 있는 排出賦課金制度는 이제 겨우 6個月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制度에 대한 인식의 아직 不足한 實情이다.

排出業所에서 生産活動中에 發生하는 汚染物質의 排出濃度가 排出許容基準을 超過할 경우 從來에는 改善命令으로만 그리고 同 改善期間中에 排出되는 超過汚染物質에 대해서는 어떤 措置를 취할 수 없었다. 따라서 排出業所에서는 公害防止施設을 設置하는데 실제로 필요한 기간 이상으로 개선기간을 연기할 뿐 아니라 심지어 일부 業所에서는 개선기간내에 개선을 하지 않고 개선기간을 연장받아 防止施設 設置를 지연하는 事例가 發生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環境을 汚染시키는 큰 要因이 되어 왔으므로 더 이상 放置할 수 없는 狀態에 이르게 되었다.

政府에서는 이러한 弊害를 事前 豫防하고 環境汚染을 效率的으로 防止하기 위하여 汚染物質의 排出程度에 따라서 經濟的 負擔으로서 賦課金を 課 함으로 汚染物質 排出者가 汚染物質 排出을 스스로 抑制하도록 誘導하는 制度인 排出賦課金 制度를 實施하게 되었다. 賦課金은 改善命令 또 는 移轉命令을 받은 후 排出許容基準을 초과하는 汚染物質을 排出하면서 操業을 하는 경우 초과 汚染物質의 排出量에 따라 부과하기 때문에 排出業體 스스로 방지지설 설치를 촉진하게 될 뿐 아니라 부과금을 적게 부가받기 위해서는 개선 또는 이전 기간을 최소한도로 단축할 것이다.

賦課金制度는 우리나라에서만 實施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環境汚染問題가 오래 전부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온 선진 각국에서 이미 실시되고 있다.

賦課對象 汚染物質의 種類, 賦課方法, 賦課金의 用途等은 各國의 實情에 따라 다양하다. 어떤 나라에서는 環境汚染問題를 해결하는데 所要되는 財源을 確保하기 위하여 賦課金制度를 도입하는 경우가 있다.

即, 公共處理施設, 共同防止施設의 設置運營을 위한 經費를 調達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질부과금, 空港 주위의 建物에 防音施設을 設置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항공기소음에 대한 特別着陸料, 公害 健康被害補償을 위한 汚染負河量 賦課金 등이 있다.

다음 기회에 자세하게 언급하겠지만 徵收된 賦課金은 國庫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環境汚染 防止基金의 財源으로 使用된다. 環境汚染 防止基金은 賦課金, 政府出捐金, 其他收益金 등으로 造成되며 同 基金은 環境汚染 防止事業, 長期低利의 公害防止 施設資金, 防止施設을 開發 등의 用途로 使用된다.

參考로 各國에서 實施하고 있는 汚染源別 賦課實施 狀況은 아래와 같다.

- 水質分野 : 캐나다, 핀란드, 프랑스, 독일, 화란, 영국
- 固形廢棄物分野 : 핀란드, 독일, 노르웨이, 스웨덴
- 大氣分野 : 日本, 화란, 노르웨이
- 騒音分野 : 日本, 프랑스, 화란

現在 우리나라에서는 大氣, 水質 및 惡臭 汚染物質에 對해서 賦課하고 있다.

<다음 號에 계속>